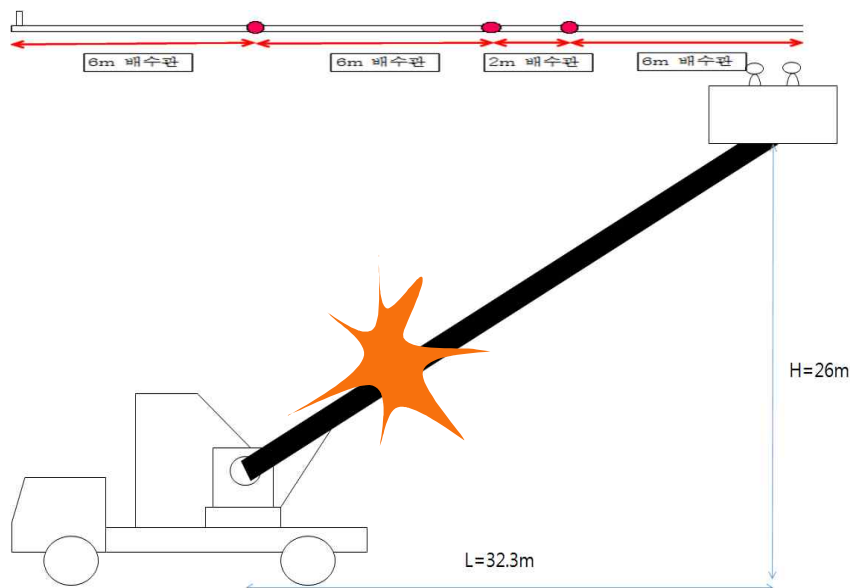


고소작업대 붕대 2단 부위가 꺾이면서 재해자 2명이 탑승함과 함께 높이 26m 아래 지면으로 떨어져 사망

공 사 명	○○산업(주) / ○○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○공구	발생일시	2016년 5월 14일 17:21분경
재해형태	추락	재해정도	사망 2명
소 재 지	경북 ○○군 ○○면	공사규모	도로 총연장 7.25km, 폭 23.4m
재해개요	2016. 5. 14(토) 17:21경 경북 군위군 소보면 서금로 소재 ○○~○○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 건설공사 제○공구 현장에서 교량배수관 설치 협력업체인 ○○이앤씨 소속 배관공 2명이 산호교 상주방향 P6~P7 배수관 설치작업을 위해 차량탑재형 고소 작업대(일명:스카이)의 탑승함을 타고 P6~P7의 중간지점으로 붕대를 인출하여 십자배수관을 설치하려던 순간 붕대 2단부위가 꺾이면서 재해자 2명이 탑승함과 함께 높이 26m 아래 지면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.		

재 해 상 황 도



안전대책

- 고소작업대 허용 작업반경을 고려한 적절한 작업방법 준수
 - 고소작업대의 「작업범위도」 및 「장비의 주요 제원」의 작업능력상에 작업반경 및 정격하중을 고려하여 현장작업여건에 충분한 능력의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작업계획 및 장비의 작업범위도 등에 따라 작업반경 및 정격하중을 준수하여야 함.
- 방호장치의 적절한 사용
 - 고소작업대가 허용 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모멘트 리미트 등 부착된 방호장치의 정상작동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.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(고소작업대) 작업시 작업시작전 점검 및 작업지휘 철저
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(고소작업대)를 사용하는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과부하방지장치의 작동유무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야 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.